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6 발의연월일: 2020. 12. 29.

발 의 자:한병도·정태호·정일영

이광재 · 김승원 · 권인숙

강민정 · 신영대 · 이용호

김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에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를 마주 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기타 골목길 등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2019.4.6.)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에서도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사망자가 한 해 평균 1,313명(하루 3.6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하였음.

이에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 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 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1호의2 신설, 제8조의2 신설, 안 제156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설치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로를 말한 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통행)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단,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 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 우 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 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제156조제1호 중 "제5조"를 "제5조, 제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1.(생략)	1.~31.(현행과 같음)
<u><신 설></u>	<u>31</u> 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안
	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
	조물로 표시하여 보행자의 안
	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
	하도록 설치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도로를 말한다.
<u> <신 설></u>	제8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통행)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
	<u>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u>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2
	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단, 보행자는 고의로
	<u>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u>
	<u>아니 된다.</u>

제156조 (벌칙) (생략)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 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 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 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 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 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 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 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 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 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③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우
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여야 하
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
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 (벌칙) (현행과 같음)
1. 제5조, 제8조의2제3항,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 10. (현행과 같음)